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6

제출년월일: 2001. 4. 4.
제 출 자: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보증채무관리 등에 대한 사무가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규제정비대상 사무로 확정됨에 따라 보증채무 범위의 개선 및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보증채무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채무변제에 따른 담보권 확보시 "저당권 설정 외에 보증보험증권"도 가능하도록 담보확보 범위를 추가
(안 제4조제2항)

나. 보증채무 신청대상이 되는 내용변경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안 제5조)

다. 채권자의 권리확보 및 공익목적을 위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 조건을 제시(안 제7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없음
나.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마. 기 타 : 행정규제개혁 정비대상 목록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채권자는" 을 "채권자 및 채무자는"으로 하고,
제4조 제2항중 "채권자는"을 "채권자 및 채무자는"으로 하며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를
"저당권의 설정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채무변제에 필요한 담보를
취득하여야"로 한다.

제5조중 "채권자" 앞에 "공익상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거나 변제가능한 채무범위 내에서"를 삽입한다.

제7조 제2항중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를 "1개월 이내에 채무의 변제여부를 확인하여 채권
자가 주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했음을 확인했을 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 및 채무자는 ---------- ---------- ---------- ---------- ---------- ② 채권자 및 채무자는 ---------- ---------- - 저당권의 설정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채무변제에 필요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 ---------- ---------- ----------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공익상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변제가능한 채무범위내에서 ------ ----------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생 략 ②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현행과 같음 ②---------- -- 1개월 이내에 채무의 변제여부를 확인하여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했음을 확인 했을 때 ----------

" HAPPY700 평창입니다 "

평 창 군

우232-800/ 강원 평창 평창읍 하리210-2/☎(0374)330-2291(행)291/ 전송330-2590
처리부서:자치행정과(본청2층), 과장 :장하진, 사회발전담당 : 노재철, 실무자 : 장연규

문서번호 자치 13200 - 2057

시행일자 2000. 9. 25. (년)

경유

받음 받는곳 참조

참조

보존기간	년	군 수	
공개여부	공 개	결재	
부 군 수			
과 장	전 결		
기 안 자	(서명)	담당 노재철	협조
심 사 자		심사일	

제목 행정규제목록 확정에 따른 조례.규칙 정비 철저

1. 평창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 회의개최결과 확정된 행정규제정비목록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2. 각 실과소에서는 붙임 목록에 대한 조례,규칙,규정 등을 **10월말까지 정비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완화 및 폐지 규제에 대하여 읍면공무원 및 주민들에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규제목록 전반에 대한 붙임 서식의 **행정규제등록서**를 규제 건별로 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10. 12(목)까지 통보하여 주시고 정비대상 규제목록에 대하여 정비일정을 9. 29(금)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규제모델적용결과 정비대상목록에 대한 주요정비내용 1부.
2. 행정규제목록 1부.(전자우편송부)
3. 행정규제등록서 1부. 끝.

평 창 군 수

받는곳 : 노,로

▶ 재무과 소관(목록 연번 256, 268, 270~277)

○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에 규정된 '**채무보증서의 교부시 담보확보의무(256)**', '**보증채무의 변경(268)**', '**보증채무의 이행제한(270)**' 규정을 완화

연번	현행(조항 요약)	정비방향
256	제4조1항및2항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전에 채무변제에 대한 충분한 담보 또는 대출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	채무변제에 담보를 제시하기란 어려울것이고, 이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굳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을것이므로 입법취지를 살려 완화
268	제5조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변경시에도 채무보증신청서 제출 및 채무보증서 교부	보증채무 신청대상이 되는 내용변경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선
270	제7조제1항및2항,보증서양식등 -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는 그 사유서를 제출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사유가 인정될 때 한해서 이행절차 수행 -채권자는 조례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함 -주채무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우선 변제해야 함	사유가 인정될 때 한해서 이행절차를 밟을 경우 채권자의 권리가 장기간 불확정될 개연성이 존재하여 이런 경우 본 조항의 입법취지인 공익목적을 위한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예컨데 '사유서를 제출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의 변제 여부를 확인하여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했음을 확인한 때나, 해당기간의 종료일로부터 이행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 완화

○ 평창군세부과징수규칙에 규정된 '**자동차이동사항신고(271)**' 규정을 폐지

연번	현행(조항 요약)	정비방향
271	제106조 자동차 이동사항 신고는 별지 제63호 서식에 의해 신고함	취득세 신고와 중복규제로 폐지